탄 원 서

항소심 제출용 · 개별 형사책임 심리와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시민 탄원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재판장님 및 재판부 귀중
사건 2026노648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고인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탄원 취지 1심 무죄 판단 유지 요청

---

1. 탄원의 취지: 선처가 아니라 무죄 판단의 유지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윤승영 피고인에게 내려진 제1심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신중히 유지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윤승영 피고인에 대하여는 2026년 2월 19일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유죄를 인정한 사람에 대한 관용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의 기준이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원 요청을 보고했다는 사실과, 그 요청이 국헌문란을 위한 불법 체포 작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그 간격을 증거로 메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불리한 증언과 의혹도 빠짐없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서 방첩사 관계자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의 준비, 국회로 이동할 인력을 안내할 경찰관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공판에서는 하급 간부가 그 지원 요청을 윤승영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고, 다른 간부도 관련 보고 및 경찰청장 측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지원 요청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고 내용에 불법적인 체포 대상·목적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예컨대 당시 보고된 인원수와 이동 목적, '체포조'라는 표현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 정치인 등의 명단과 체포 목적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하급자의 전달 내용이 단계마다 달라졌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보고의 존재와 범죄 목적의 인식을 동일시하는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1심 무죄의 핵심은 합리적 의심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공개된 제1심 선고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윤승영 피고인이 계엄 관련 매뉴얼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지원 업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 또는 포고령 위반 사범의 검거 업무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과 공유에 관하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을 완벽히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범죄 목적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의심이 실제 기록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능성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고, 검사는 그것을 해소할 정도의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인상만으로 그 기준이 낮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특검의 항소 주장과 변호인의 반론을 정확히 대조해 주십시오

2026년 5월 항소심에서 윤승영 피고인 측은 정치인 체포를 위한 방첩사 지원 요청의 실질적 내용을 보고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으며,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지원에 관한 한정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검 측은 하급자의 보고와 경찰력 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불법적인 목적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어느 쪽 설명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하급자의 최초 통화 내용, 그가 상관에게 실제로 전달한 문구, 윤승영 피고인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내용, 경찰관 출동이나 명단 준비에 관한 실질적 지시, 현장으로 연결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차례대로 따져 주십시오. 보고체계의 각 단계를 하나의 행위처럼 뭉뚱그리면, 하급자가 알고 있던 내용까지 상급자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불법 목적을 전달받았다는 통신기록과 일관된 증언이 있다면 그 증거도 엄정히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5.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각각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87조 제2호와 제91조가 문제 되는 경우, 범죄 목적을 인식·공유하면서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서 간 연락을 취했거나 업무를 보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임무의 수행과 주관적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23조에 관하여도 실제 직권의 범위, 어떤 지시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누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 또는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적 협조의 부적절성이나 사후적인 비난 가능성은 해당 범죄의 각 요건에 관한 입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6. 국가적 사건일수록 입증의 원칙이 동일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든 명백히 위법한 명령의 목적을 알고 이행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를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까지 결과 전체를 귀속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조직도상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인식과 행위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 달라는 이 부탁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우대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증명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입니다.

특검이 1심에서 남았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항소심은 그 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사건의 상징성, 언론의 관심,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만으로 윤승영 피고인 개인의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1심 무죄 판단의 취지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7. 맺음말

존경하는 재판부 여러분. 저는 윤승영 피고인을 모른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도, 그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보호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지원을 요청했고, 피고인에게 무엇이 전달되었으며, 피고인이 어떤 법적 의미의 행위를 했는지를 끝까지 구분하여 주십시오. 특검이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공유와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제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단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실제 제출 시 기재사항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십시오.